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1. 5.>

-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얼굴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이하 '카메라')의 설치·운영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정보가 불필요하게 저장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함

1 수칙 적용 대상

◆ (적용 카메라) 온도측정 기능이 있는 '얼굴 촬영(실사) 열화상카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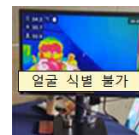
※ 적외선 방식으로 형태만 표시(컬러구분)되는 경우 개인식별성이 없어 제외되나,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에 해당 시 수칙이 적용됨

(얼굴 실사 촬영) 수칙 적용



(형태만 표시) 수칙 미적용

※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등 개인식별성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적용 기관) 공공민간시설에서 상기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관(사업자)

2 카메라 설치·운영자의 개인정보 처리 준수사항

1. (기본원칙) 발열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영상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영상을 수집·저장·관리·전송하는 경우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조, 제15조)

-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얼굴영상은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면 저장·관리할 수 없습니다. (보호법 제15조)
- 만일, 카메라에 영상정보를 저장·전송(네트워크 등)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여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저장·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저장·전송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없는 카메라 기종의 경우에는 수시로(1일 1회 이상)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 (동의를 받은 경우) 업무상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안내)한 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으로 수집·저장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수집·저장하려는 경우, ①수집·이용 목적, ②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보유 및 이용 기간, ④동의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15조)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해야 합니다. (보호법 제16조)

3. (안전조치) 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저장하는 경우, 운영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얼굴영상을 처리하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9조, 제30조, 시행령 제30조 및 제48조의2)
- 아울러, 운영자 외 제3자가 카메라 또는 관리 프로그램 등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하지 못하도록 접근을 제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파기) 운영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이용자가 개인정보 파기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카메라 운영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보호법 제21조)

3 이용자(정보주체) 안내사항

1. (권리보장) 카메라가 설치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자신의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카메라 운영자에게 본인 영상정보 등의 수집·저장 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 촬영된 개인정보의 삭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법 제35조, 제36조)

2. (침해신고)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등을 통해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유출 또는 오남용된 경우, 침해사실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전화(국번없이 118), 인터넷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자우편(118@kisa.or.kr)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카메라 제조·판매·설치지원 사업자(이하 '카메라 사업자') 협조사항

1. 카메라 사업자는 카메라 운영자가 수칙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기능 설정 안내 및 기술적 지원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 ※ (안내·지원사항 예시) 카메라의 영상저장·전송 기능 비활성화(끄기), 저장된 영상의 삭제 및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이행 방법 등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관련 규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